



2023 디지털성범죄 피해 대응 안내서

경기도디지털성범죄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



2023
디지털성범죄
피해 대응 안내서

경기도디지털성범죄피해자원스튜디오지원센터

해당 안내서는 올바른 디지털문화 정착을 위해 법적 용어가 아닌 대안적 용어를 선택한 경우가 있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편견을 확산하지 않기 위해 용어 사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함을 안내합니다.

CONTENTS



04

1. 디지털성범죄 바로 알기

- 1. 디지털성범죄의 개념 06
- 2. 디지털성범죄의 유형 08
- 3. 디지털성범죄 피해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10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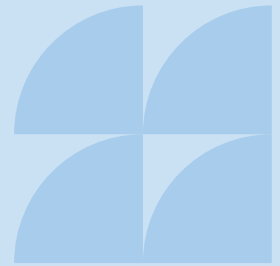
2. 디지털성범죄에 대응하기

- 1. 「경기도디지털성범죄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 지원 안내 14
- 2. 디지털성범죄 관련 상식 18
- 3. 수사 기관 연계 지원 안내 21



2023 디지털성범죄 피해 대응 안내서

경기도디지털성범죄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



24

3. 디지털성범죄 피해 유형별 대응하기

1. 불법 촬영	26
2. 유포	28
3. 유포 불안	30
4. 유포 협박	31
5. 불법 합성 및 도용	33
6. 온라인 내 성적 괴롭힘	35
7. 몸캠피싱	38
8. 온라인 그루밍	40
9. 성매매 유인·강요	44

48

부록

디지털성범죄 발생 시 교내 처리 절차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

2023 디지털성범죄 피해 대응 안내서

1

디지털성범죄 바로 알기

1. 디지털성범죄의 개념
2. 디지털성범죄의 유형
3. 디지털성범죄 피해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경기도디지털성범죄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

1

디지털성범죄의 개념

디지털 성범죄란 무엇인가요?

디지털성범죄는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오프라인 공간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을 의미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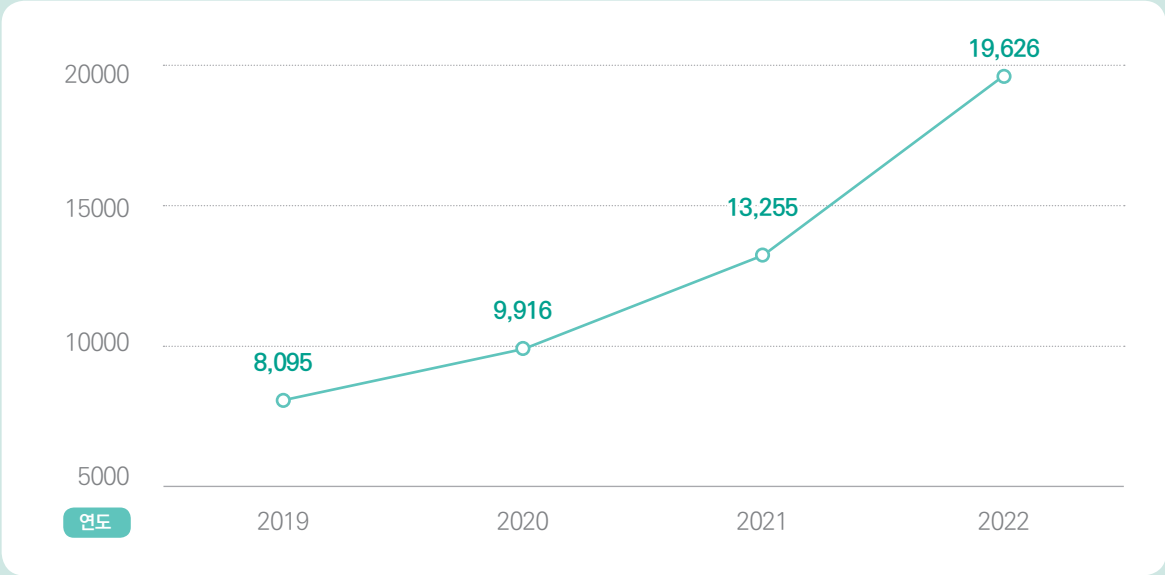
디지털성범죄는 성을 대상화·도구화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로, 인권침해범죄에 해당합니다.

디지털성범죄에는 촬영물(사진/영상)을 기반으로 한 동의 없는 신체 촬영, 합성, 도용, 촬영물을 유포·협박·소지·구입·저장하는 행위, 온라인 그루밍, 언어(텍스트)를 기반으로 한 성적 괴롭힘, 몸캠피싱 등이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물리적 제약이 없는 시·공간을 초월하여 발생하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를 통해 가해와 피해가 동시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 번이라도 온라인에 게시가 되면 공간의 특성상 완벽한 삭제가 어렵고, 조건만남·준강간·스토킹·주거공간 및 공공장소 침입·데이트폭력 등 오프라인에서의 피해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또 가해자가 피해자의 약점을 빌미로 성매매를 강요하거나 지속적인 성착취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온라인에서 만난 사람이 조금이라도 이상하다고 생각되면 연락을 즉시 중단하고 믿을 수 있는 기관에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청의 범죄통계에 따르면 디지털성범죄는 꾸준히 증가세에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와 허위영상물을 이용한 성범죄는 2020년을 기점으로 대폭 증가하였으며,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와 ‘촬영물등 이용 협박, 강요 등’ 또한 급격한 증가세를 보입니다. 디지털성범죄 특성 상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고, 알고 있더라도 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고려하면 집계되지 않은 피해는 더욱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디지털성범죄 발생건수 (2019~2022년)



연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음란물유통)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카메라 등 이용촬영, 반포 등)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통신매체 이용 음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아동 청소년 성 착취물 소지·제작·배포 등)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허위 영상물편집, 반포등)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촬영물 등 이용협박, 강요 등)	계
2019	-	5,893	1,454	748	-	-	8,095
2020	-	5,005	2,070	2,684	32	125	9,916
2021	-	5,686	5,079	1,672	260	558	13,255
2022	598	5,876	10,563	1,598	170	821	19,626

출처 : 경찰청(2020~2023), 「범죄통계」

가해자들이 단속 및 수사를 피하기 위해 범죄의 유형 및 수단을 다양화하고 있는 한편,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자를 도우려고 하는 경우에는 당황하거나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경기도디지털성범죄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에서는 적절한 대처 방안을 안내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2

디지털성범죄의 피해 유형

유형	개념	예시	적용법률
불법 촬영	동의 없이 사람의 신체를 성적 대상으로 촬영당하는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장소 및 생활공간에서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 당함 • 성적인 행위를 동의 없이 촬영 당함 	성폭력처벌법 제14조 ①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유포	사람의 신체를 성적 대상으로 한 영상물이 동의 없이 유포 및 재유포 되는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의하에 촬영한 성적 영상물이 동의 없이 유포됨 • 동의 없이 유포된 성적 영상물 또는 복제물이 저장되어 재유포됨 	성폭력처벌법 제14조 ②,③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불법정보의 유통 금지 등)
유포 불안	유포 여부는 명확히 알 수 없으나 성적 영상물의 유포 가능성으로 불안한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포를 직접 확인하지 못했으나 전 연인 등이 영상의 존재에 대해 암시하거나 협박당함 	
유포 협박	성적 영상물 또는 복제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당하는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라인 대화방에서 성적 촬영물을 주고받은 후, 다른 촬영물을 보내지 않으면 유포하겠다고 협박당함 • 다시 만나주지 않으면 연인관계일 때 찍어둔 성적 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당함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①③
불법 합성	사람의 신체를 성적 대상으로 하는 편집, 합성, 가공 행위에 동의 없이 사진, 영상, 음성 등을 이용당하는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NS 등에 올린 사진이 딥페이크 어플을 이용해 성적인 영상과 합성됨 • 자신의 사진, 영상, 음성 등이 타인에 의해 성적인 함의를 담아 가공됨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허위영상물의 반포 등) 형법 제307조(명예훼손죄), 제311조(모욕죄)
불법 도용	사람의 신체를 성적 대상으로 하는 매체에 사진과 영상, 음성 등을 도용당하는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적인 내용의 게시글에 자신의 사진이 무단 게재됨 	형법 제307조(명예훼손죄), 제311조(모욕죄)

유형	개념	예시	적용법률
온라인 내 성적 괴롭힘	온라인에서 성적 내용을 포함한 명예훼손이나 모욕, 공격 등을 당하는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체 채팅방, 커뮤니티 등 온라인 공간 내에서 성희롱을 당함 • 게임, SNS에서 만난 사람이 성적인 사진 혹은 영상 등을 요구함 • 원하지 않는 성적 이미지나 영상, 혹은 그러한 매체가 게재된 웹사이트 주소를 받음 • 온라인에 개인정보가 공유되어 성적인 모욕과 공격 등을 조장당하거나, 집단적으로 모욕·공격 등을 당함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제15조 (알선영업행위 등) 제15조의2 (아동·청소년 성 착취 목적 대화 등) 성폭력처벌법 제14조 ②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아동복지법 제17조 제71조 ① 정보통신망법 제70조(벌칙) 형법 제307조(명예훼손죄), 제311조(모욕죄)
몸캠피싱	온라인 상의 의사소통을 통해 촬영되었거나 녹화된 성적 영상물을 빌미로 협박받는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랜덤 채팅 사이트 등을 통해 알게 된 사람이 성적인 촬영물 전송을 유도해 받아낸 후 해당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금전을 요구함 	정보통신망법 제48조 ②, 제70조의2 (정보통신망침해행위등의금지) 형법 제350조 ① (공갈)
온라인 그루밍	온라인에서 만나 가까워진 상대에게 반복적으로 성적인 대화나 성적인 행위를 하도록 요구받는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성 또래라고 속여 접근한 인터넷 지인을 오프라인에서 만나 성폭행을 당함 • 채팅 앱 등에서 고민 상담을 해주겠다고 접근한 사람이 성적인 사진을 찍어 보내도록 유도함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 (알선영업행위 등)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의2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 착취 목적 대화 등) 성폭력처벌법 제14조 ②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아동복지법 제17조 제71조 ①
기타	그 밖에 온라인 공간에서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당하는 행위		

1. 디지털성범죄 바로 알기
 2. 디지털성범죄에 대응하기
 3. 디지털성범죄 피해 유형별 대응하기

3

디지털성범죄 피해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 아래 질문에 대해 경험 해 본 적이 있는 항목에 표시해보세요.

디지털성범죄 피해 자가진단 항목

1 내가 원하지 않는데 성적인 사진·영상·음성 등을 촬영·녹음 당했다.

2 내가 원하지 않는데 나의 성적인 사진·영상·음성 등이 수집되거나,
약속과 다르게 파기되지 않거나 유포되었다.

3 내가 원하지 않는데 나의 신체·얼굴을 합성한 성적 사진과 영상 등이 유포되었다.

4 누군가 나의 이름, 나이, 사진, 전화번호, 직업, 주소, 직장 등의 개인정보나 위치 정보를
무단으로 다른 사람에게 보내거나 온라인에 게시하여 성적인 모욕에 이용했다.

5 누군가 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사칭하여 나에게 대한 성적인 이야기를 온라인에
퍼트렸다.

6 나의 개인정보 혹은 성적인 사진·영상·음성 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요구를 받아주거나
비위를 맞춰주지 않으면 개인정보·성적 촬영물을 유포하거나 직접 찾아오는 등
괴롭힐까봐 걱정된다.

- 7 온라인에서 만나 친해진 사람과 대화할 때 성적인 화제로 유도하거나 성적인 촬영물을 보내도록 요구받았다.

- 8 SNS에 성적인 글이나 사진 등을 올렸더니(일탈계 활동 등) 누군가가 내 행위가 범죄라며 신고당하기 싫으면 시키는 대로 하라고 협박했다.

- 9 온라인에서 만난 사람이 자신과 대화한 것이나 대화의 내용을 꼭 비밀로 하라고 했다.

- 10 온라인에서 만난 사람이 대화한 내용이나 주고받은 파일을 삭제하라고 요구했다.

- 11 채팅 앱, 이메일, SNS, 메신저, 문자메시지, 댓글 등으로 성적인 글·사진·동영상, 성적 대화나 성매매(조건만남 등) 제안을 받았다.

- 12 온라인 게임 채팅·게시판 등에서 성적인 욕·평판·놀림 등을 당했다.

- 13 대출, 일자리, 밀린 임금을 받기를 원하면 성적인 촬영물(성관계·자위 영상, 신체부위 등)을 보내라는 요구를 받았다.

- 14 온라인에서 만난 사람으로부터 잠자리, 식사, 담배, 그 외 원하는 것(관상서비스, 게임머니, 아이템, 문화상품권 등)을 제공받는 대신 성적 촬영물을 보내달라고 하거나 성행위를 하자고 요구받았다.

1. 디지털성범죄 바로 알기

2. 디지털성범죄에 대응하기

3. 디지털성범죄 피해 유형별 대응하기

위 체크리스트는 디지털성범죄의 전형적인 피해 양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라도 체크를 했다면 이미 디지털성범죄 피해를 입었거나 추후 범죄 피해로 이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체크리스트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디지털성범죄 피해로 의심되는 경험을 했거나 피해에 대한 위험 혹은 불안을 느낀다면 전문 지원 기관(경기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 ☎1544-9112)로 연락하여 상담과 피해지원을 받으세요.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

2023 디지털성범죄 피해 대응 안내서

2

디지털성범죄 대응하기

1. 「경기도디지털성범죄피해자원스톱 지원센터」 지원 안내
2. 디지털성범죄 관련 상식
3. 수사 기관 연계 지원 안내

경기도디지털성범죄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

1

「경기도디지털성범죄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 지원 안내

경기도디지털성범죄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는

경기도가 광역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설립한 디지털 성범죄 대응기관으로 피해자를 위한 상담, 삭제 및 모니터링, 법률 지원, 수사 및 기타 연계를 지원합니다.

-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 개소(21. 3. 3.)
- 경기도 - 경기도여성가족재단 - 한국여성변호사회 업무협약 체결(21. 6. 14)
- 경기도여성가족재단 - 경기도 교육청 업무협약 체결(21. 7. 9.)

디지털 성범죄 특성상 다양한 지원이 동시에 이뤄져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피해자를 위한 전문 지원기관 간의 협력이 중요합니다. 경기도디지털성범죄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는 경기도내 해바라기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성문화센터, 성폭력상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경찰청 및 경기권역 경찰서, 경기도교육청 등 총 226개 기관과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2023.8.25. 기준)

◎ 피해자 맞춤형 서비스 지원 내용

디지털성범죄 발생 시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 ☎1544-9112」로 전화하여 상담을 진행하고 맞춤형 피해 지원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형	내용
상담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지원을 위한 전반적 상황 파악 • 심리적 지지 • 피해접수에 필요한 서류 및 사건 처리 절차 안내 • 기타 피해 및 센터 이용 안내
삭제 및 모니터링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 촬영물의 유포 현황 파악 • 플랫폼별 삭제요청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피해촬영물 페이지 차단 요청 • 수사 연계를 위한 증거 자료 수집(수사진행 및 내담자 요청 시) • 내담자에게 삭제 지원 결과 보고서 발송

유형	내용
수사 지원 및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해대응 전담인력이 피해자와 1:1로 상담 및 수사 지원 수사·사법 처리 절차 안내 및 채증 지원 디지털성범죄 피해 증거자료 관련 공증 지원 피해자가 확보한 진술 녹음 녹취록 작성 지원 증거자료 제출 시 국문 번역 지원 이주민 피해자 대상 통역 서비스 지원
안심지지 동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사기관 등에 방문 시 피해자 심리적지지 및 조력을 위한 동행 고소장 작성 안내 및 사건 구조화 등 조력 진술, 조서작성 등의 과정에 신뢰관계인으로 동석 피해자 보호조치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안내·조력
법률 상담 및 법률 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디지털성범죄 전문가로 구성된 법률지원단이 신속한 법률상담 제공 민형사 소송 진행시 전문 변호사 위촉을 통해 수사 및 소송절차 진행과 비용을 지원
심리치료 (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해자 상황에 따른 심리치료 비용(진료비, 검사비, 약제비 등) 지원
심리치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및 보호자에게 가족회복 프로그램 제공 자해·자살 위험군이거나 트라우마를 겪는 등 위기개입이 필요한 피해자 및 보호자(주변인)를 대상으로 전문심리상담 및 교육 지원
전문심리상담 등 연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해자의 거주지, 연령, 피해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전문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기관 등으로 연계
기타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료, 주거 등 연계 지원 주민등록번호 변경 절차 안내 및 지원 등

1. 디지털성범죄 바로 알기

2. 디지털성범죄에 대응하기

3. 디지털성범죄 피해 유형별 대응하기

◎ 피해 지원 신청 및 지원 과정



- 대표 전화: 1544-9112 ● 메일: 031cut@gwff.kr ● 카카오톡 채널: 031cut
 - 홈페이지: <https://www.gwff.kr/031cut/main.html>
 - 센터 방문: (사전예약 필수)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308번길 34, 3층 상담실
- * 상담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문의 순서대로 답변 드립니다.

◎ 구비 서류

신청자	개인정보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지원 안내 및 증거 수집 동의서	대리삭제 위임장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 증명서
피해 당사자	○	○	○	○	X	X
대리인	○	○	○	X	○	○

- ※ 센터 내 모든 상담내용과 개인정보는 비밀이 보장되며, 지원 후 모두 파기됩니다.
- ※ 기본 피해 지원 기간은 3년이며, 지원 기간 연장 시 구비 서류 재작성 및 제출이 필요합니다.
- ※ 가족관계 증명서는 대리인 신청 시 신원 확인을 위해 제출해야 하며 수사 기관의 연계 사안의 경우 수사관의 공문으로 갈음 가능합니다.
- ※ 신분증은 주민등록번호 뒷부분 여섯 자리와 주소를 가리고 제출합니다.

신분증 제출 안내

주민등록증

홍길동(洪吉童)

980808-2 주민번호6자리(가림처리)

경기도 수원시 세부주소(가림처리)

발급일자(가림처리)

수원시 장안구청장

자동차운전면허증

면허번호(가림처리)

홍길동(洪吉童)

980808-2 주민번호6자리(가림처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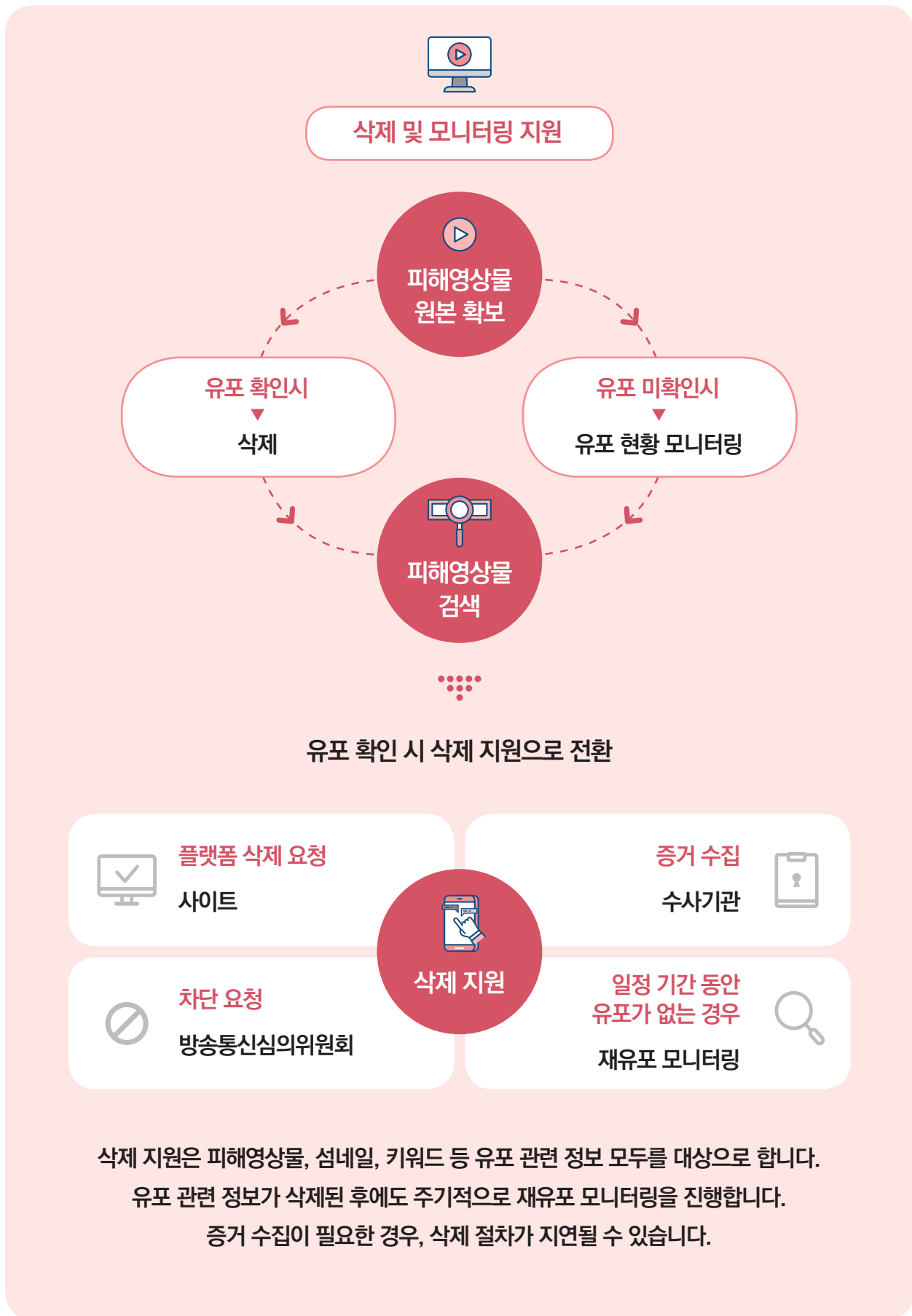
경기도 수원시 세부주소(가림처리)

적성검사기간(가림처리)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

1. 필요한 정보 외에는 반드시 가림처리 부탁드립니다.
2. 성인: 신분증, 운전면허증
3. 미성년자: 학생증, 청소년증 등

● 삭제 및 모니터링 지원 과정



1. 디지털성범죄 바로 알기
 2. 디지털성범죄에 대응하기
 3. 디지털성범죄 피해 유형별 대응하기

2

디지털성범죄 관련 상식

피해 당사자

- 피해 사실에 대해 절대 자책하지 않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대부분 피해를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사전 예방이 어렵습니다. 또 누구에게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내가 조금 더 조심했어야 한다고 자책하지 않도록 합니다.
- 피해 사실을 주변에 알릴지의 여부, 수사기관에 신고할지의 여부 모두 본인이 결정할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다만 혼자 해결해나가기 어려울 경우 주변 혹은 전문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면, 안전하게 체계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디지털 성범죄 피해 발생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인지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피해 사실을 인지한 즉시 전문 지원 기관(경기도디지털성범죄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 ☎1544-9112)에 문의하여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 성적 영상물이 온라인에 게시되었다면 해당 영상물(사진·영상·음성 등), 온라인상의 대화 내용 등 증거가 될 수 있는 자료는 삭제하지 않고 보관합니다. 해당 자료를 지우는 경우 피해 지원(삭제 및 모니터링) 및 수사 진행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디지털성범죄 증거 자료를 전자기기에서 삭제한 경우 '디지털 포렌식' 기술을 통해 삭제된 데이터를 복원할 수도 있습니다. 사설업체를 이용하는 것은 안전하지 않을 수 있으니 수사기관에 고소 및 진정 접수를 하고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하도록 합니다.
- 개인정보가 유포된 경우, 주민등록번호 변경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나 성폭력 피해자, 명예훼손 및 모욕범죄의 피해자는 생명, 신체, 재산, 등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가능합니다. 또한, 수사 및 공판 단계에서 성폭력 피해자의 인권보호 조치와 사생활 보호를 위해 가명을 사용 할 수 있습니다.

보호자 및 조력자

- 피해자를 질책하거나 비난하지 않습니다. 주변인 모두 피해자의 관점에서 공감과 지지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특히 디지털성범죄의 경우 불특정 다수에 의한 2차 가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피해가 확대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디지털성범죄 피해 발생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인지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주변에서 피해사실을 인지한 즉시 피해자와 상의 후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전문 지원 기관(경기도디지털성범죄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1544-9112)에 문의하여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자주 하는 질문

Q 경기도민이면 지원이 가능한가요?

A 경기도 내 재학, 재직, 거주자는 피해지원이 가능합니다.

Q 상담내용과 개인정보는 모두 비밀보장이 되나요?

A 모든 상담내용과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이 보장되며, 지원 이후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모두 파기됩니다.

Q 지원 비용은 얼마인가요?

A 모든 지원은 무료입니다.

Q 삭제 및 모니터링 지원에서 말하는 '피해영상물 원본' 이 무엇인가요?

A 편집되지 않은 영상 혹은 사진, 사이트 내 피해영상물이 게시된 구체적인 주소(URL)를 의미합니다. 원본 파일이 업로드된 곳에서 동일한 파일을 다운로드 받은 경우 등 피해영상물 원본의 복사본으로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Q 삭제 및 모니터링 지원을 받을 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A 피해영상물의 링크주소(URL), 피해영상물 원본(영상 혹은 사진)이 필요합니다. 상담 후 지원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주시면 접수가 완료됩니다.

※ 사안에 따라 확인 후 지원 여부 안내가 가능합니다.

Q 대화방 캡처나 웹사이트 화면 캡처 이미지만 있는 경우에도 삭제지원이 가능한가요?

A 원본 영상물 없이 캡처 이미지만으로는 삭제-모니터링 지원이 어렵습니다. 다만, 상담을 통해 가능한 다른 지원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Q 제가 미성년자인데, 보호자가 모르게 삭제 지원을 받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A 삭제-모니터링 지원은 보호자의 동의 없이도 가능합니다.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본인 이름으로 단독 고소가 가능하지만, 수사 진행 과정에서 보호자에게 고지되며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안내드립니다.

Q 피해영상물의 완벽한 삭제가 가능한가요?

A 디지털성범죄 특성상 삭제 후에도 재유포 될 수 있습니다. 센터에서는 삭제가 되었더라도 해당 영상물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지원합니다.

자주 하는 질문

Q 삭제지원 현황을 알 수 있나요?

A 초기 긴급지원 3개월간은 매달 삭제지원 결과보고서가 발송됩니다. 그 이후에는 연간 결과보고서(1년 단위), 최종 결과보고서(3년)가 발송됩니다.

Q 미성년자인데 지원을 받으려면 보호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나요?

A 미성년자의 경우, 보호자 동의 없이도 센터의 모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수사 진행 시에는 수사기관에서 법정대리인에게 해당 내용을 고지할 수 있습니다.

Q 삭제 및 모니터링 지원 기간 연장이 가능한가요?

A 삭제 및 모니터링 지원 기본 지원 기간은 3년입니다. 지원 종료 1개월 전에 연장 여부 안내 메일을 발송하며 연장을 원하는 경우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3년 단위로 지원 연장이 가능합니다. 또한 피해자가 삭제지원 종단을 원하면 지원 기간이 남아있어도 종단이 가능합니다.

Q 대화방(카카오톡, SNS메신저 등)에서 제 영상·사진을 주고받고 성적 모욕성 대화를 나누다고 해요. 이러한 경우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일대일 대화방(카카오톡, SNS메신저 등)에서의 유포는 피해 지원 기관에서 삭제 및 모니터링지원이 어렵습니다. 단,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되었을까봐 불안하다면 피해영상물 유포 모니터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가해자가 피해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을 해요. 가해자의 요구(금전, 교제, 영상 촬영 등)에 응해주면 피해촬영물 유포를 막을 수 있나요?

A 가해자의 요구에 응해도 새로운 협박으로 이어지는 것이 대부분이니 절대 요구에 응하지 마세요.
가해자가 오프라인에서의 만남을 요구하는 경우, 만남을 통해 물리적 성폭력, 불법촬영, 성매매 강요 등 새로운 피해로 이어지는 일이 많으니 요구에 응하지 말고 경기도디지털성범죄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 등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으려 합니다.
피해 증거(대화내용, 가해자 계좌번호, 계정ID 등)를 수집하여 수사기관의 도움을 받고 피해촬영물을 확보하였다면 경기도디지털성범죄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에서 삭제 및 모니터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몸캠피싱 피해의 경우 지인들에게 해킹사실을 알려 추가 유포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합니다.

Q 가해자를 신고하고 싶은데, 어떠한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A 수사지원(채증지원) 및 법률지원이 가능하며, 수사기관에 출석 시 상담 담당자와 안심지지 동반이 가능합니다.

3

수사 기관 연계 지원 안내

디지털 성범죄 피해 신고 시 경찰 수사가 어떻게 이루어 지나요?

- 수사기관(관할 경찰서, 경기북부·남부 경찰청)과 연계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피해자(보호자 포함)가 경찰서(민원실 또는 수사팀)를 방문하여 신고하는 경우**
 평일 주간에 방문하여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야간 혹은 공휴일에 방문하더라도 교대근무 담당자에게 조사받을 수 있습니다. 범죄지, 피의자 주소지 등에 따라 최초 사건 접수 이후 사건이 이송되기도 합니다.

- ◎ **경찰관서에 방문 신고가 어려운 경우**

- 홈페이지(www.police.go.kr) 접속 → [신고/지원] → [사이버범죄 신고/상담] 클릭

※ 신고접수 시 피해 내용을 상세히 기재하여 주시고, 필요한 경우 구체적 피해사실 확인을 위하여 경찰관이 출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최대 14일 이내 처리 예정)

- ◎ **수사기관 및 재판 절차에서 받을 수 있는 피해자보호**

구분	내용
동성수사관 전담 수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자가 여성인 경우 여성 경찰관이 조사하되, 예외적으로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남성 조사관 조사도 가능함.
신뢰관계인 ¹⁾ 동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 등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 조사 과정에 참여하게 함. • 특히 13세 미만 또는 정신장애, 심신미약인 피해자의 경우 신뢰관계인을 의무적으로 동반하여 조사를 진행함.
국선변호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변호사 참여 하에 조사가 가능하며 무료 국선변호사 선임을 지원함. <p>※ 경기도디지털성범죄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에서 디지털성범죄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무료 법률구조를 지원받을 수도 있음.</p> <p>※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의 개정으로 19세미만 피해자등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에는 검사가 의무적으로 국선변호사를 선정하도록 바뀌었음.</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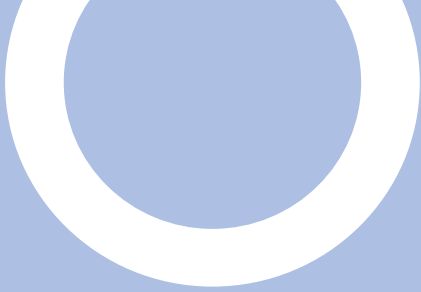
구분	내용
19세미만 피해자 대상 수사 및 재판절차에서의 배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자 등의 진술을 듣는 절차가 타당한 이유 없이 지연되어서는 안 됨. • 피해자 등의 진술을 위하여 아동 등에게 친화적으로 설계된 장소에서 피해자 조사 및 증인신문을 해야 함. • 피해자 등이 피의자 또는 피고인과 접촉하거나 마주하지 않도록 해야 함. • 피해자 등에게 조사 및 심리, 재판 과정에 대해 명확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함. • 조사 및 심리,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등의 보호 및 지원 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 피해자 등의 진술을 녹화한 영상물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음. • 진술조력인이 수사과정과 재판과정에 참여하도록 할 수 있음. <p>※ 기존 13세에서 19세 미만으로 보호 범위가 넓어졌습니다.</p>
피해영상물 삭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사기관이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와 연계하여 피해 영상물 삭제를 지원함.
가명조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나 신고자의 경우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실명 대신 가명을 활용하여 사건 서류 작성이 가능함.
사건처리 진행상황 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건 진행에 따라 구두, 전화, SMS 등 사건 접수 시 피해자가 요청한 방법으로 송치, 이송, 종결 시 사건 처리 진행상황을 통지함.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해자의 보복이 우려되는 경우 신변 보호 조치²⁾를 요청할 수 있음. • 경찰에 피해신고 접수 뒤 사건 수사와 병행, 사건 담당자 및 피해자보호 담당(여성청소년과 소속, 청문 소속) 경찰관이 협력함. • 사안에 따라 타 기관·단체와 연계하여 쉼터 제공, 가해 보복 우려 등으로 주거지를 옮기는 경우 이전·생계·치료비 지원과 법률지원 등을 추진함.

1) 신뢰관계인 : 피해자의 직계친족, 형제자매, 배우자, 가족, 동거인, 보호시설 또는 교육시설의 보호 또는 교육담당자 등

2) 신변 보호 조치 : 임시숙소 제공, 전문 보호시설 연계, 맞춤형 순찰, 위치추적 및 수사기관에 긴급 SOS 기능이 탑재된 손목시계 형태의 스마트워치 지급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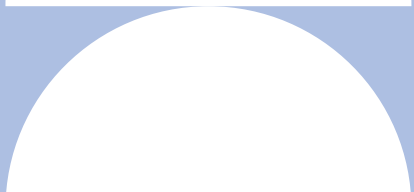
2023
디지털성범죄
피해 대응 안내서

경기도디지털성범죄피해자원스톡지원센터



2023 디지털성범죄 피해 대응 안내서

3



디지털성범죄 피해 유형별 대응하기

1. 불법촬영
2. 유포
3. 유포 불안
4. 유포 협박
5. 불법합성
6. 온라인 내 성적 괴롭힘
7. 몸캠피싱
8. 온라인 그루밍
9. 성매매 유인·강요

경기도디지털성범죄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

1

불법 촬영

어떤 피해 사례가 있을까요?

“카페 화장실에서 휴지문체에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봤어요.”
 “연인의 핸드폰에서 제 동의 없이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것을 발견했어요.”
 “숙박업소에서 연인과 성관계 하는 영상이 성인사이트에 돌아다니는 것을 지인을 통해 알게 되었어요.”

- 동의 없이 신체를 성적 대상으로 촬영당하는 것이 불법 촬영 피해에 해당합니다. 대상자가 모르는 채로 불법 촬영을 당한 경우 피해를 입은 지 한참 뒤에야 유포 등의 파생 범죄와 함께 피해 사실을 알게 되기도 합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 불법 촬영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촬영기기를 발견하였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합니다. 특히 이동형 촬영의 가해자는 현행범으로 잡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건 발생 현장 주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도록 합니다.
- 피해 사실이 명확하다면 피해영상을 확보하여 주세요. 피해영상이 유포된 사이트의 URL이나, 게시물 제목, 키워드 등을 확보하여 추가 피해의 범위를 축소해야 합니다.
 ※ 피해영상이 확보되어야 피해지원기관에서 삭제 및 모니터링 지원이 가능합니다.
- 피해영상을 직접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수사 기관에 신고하여 증거 수집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가해자 특정이 가능한 경우 정황 증거를 확보하여 수사 기관에 고소 및 진정서를 접수해 가해 사실을 확인하고 피해영상을 확보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증거(피해영상물) 확보를 위해 디지털 포렌식³⁾을 받고 싶다면 확인해 주세요.

- 가해자의 촬영기기를 확보하였을 때, 피해영상물이 지워졌더라도 수사기관에 사건 접수 후 수사 과정에서 증거(피해영상물) 확보를 위한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복원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수사과정 중 가해자의 클라우드 등을 연동하여 피해영상물 저장 여부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 만일 수사 기관의 도움을 받지 못해 사설 업체를 통해 복원을 진행한다면, 피해영상물에 대한 보안상 위험 등이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하며, 안전을 위해 가능하면 수사 기관 및 공공기관에서 도움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3) 디지털 포렌식(digital forensic): PC나 노트북, 휴대폰 등 각종 저장매체 또는 인터넷에 남아있는 각종 디지털 정보를 분석해 범죄 단서를 찾는 수사기법

센터에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수사 및 법률 지원

필요에 따라 희망하시는 경우 고소 및 진정을 도와드리며, 전문 법률 상담과 법률 구조(디지털성범죄 전문변호사 선임 및 민·형사 소송비 지원)도 가능합니다.

전문 심리상담 및 의료 지원

피해에 대한 초기 상담에 더해 필요에 따라 긴급 위기개입, 가족회복 프로그램, 전문심리상담 및 교육, 병원 진료비 지원 등을 지원해드립니다.

기타 지원

필요에 따라 의료 연계 및 주거 연계, 주민등록번호 변경 등을 지원해드립니다.

대표적인 적용 법률은 무엇이 있나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례에 따라 수사기관·사법기관의 수사 및 판단 등에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적용 법률은 다를 수 있습니다.

2

유포

어떤 피해 사례가 있을까요?

“제가 친구한테만 보낸 신체 사진을 SNS에서 발견했어요.”
 “연인과 찍은 성관계 영상이 성인사이트에 업로드 된 걸 발견했어요.”
 “전 연인과 주고받은 성적 영상을 지인들에게 메신저로 퍼트린 것을 알게 되었어요.”

- 촬영 당시 대상자의 동의를 구했다 하더라도 업로드 시에 동의를 얻지 않았다면 불법유포에 해당하는 엄연한 범죄입니다. 추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피해 지원 기관에서 삭제 지원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 주변인 혹은 제3자들은 피해자의 행실을 탓하지 않도록 합니다.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를 비판하는 행위는 범죄를 정당화하여 사회에 악영향을 줄 뿐 아니라 피해자의 회복을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 온라인에 촬영물이 유포되었음을 확인한 경우 유포가 발생한 게시글 URL, 원본 영상 등 유포된 피해 증거를 확보하여 수사 기관에 신속하게 신고합니다. 또한 피해 지원 기관 (경기도디지털성범죄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 ☎1544-9112)에 연락하여 상담 및 피해 촬영물 삭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 개인 간 대화나 메일을 통해 촬영물이 유포 된 것을 알게 된 경우 피해영상물, 대화내용 등 증거를 수집하여 수사 기관에 신고 한 뒤 피해 지원 기관의 모니터링 지원을 통해 온라인에 유포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합니다.

센터에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수사 및 법률 지원

필요에 따라 희망하시는 경우 고소 및 진정을 도와드리며, 전문 법률 상담과 법률 구조(디지털성범죄 전문번호사 선임 및 민·형사 소송비 지원)도 가능합니다.

삭제 및 모니터링 지원

피해영상물 원본이 없더라도 피해영상물이 유포된 웹사이트 주소만으로 삭제 및 모니터링 지원이 가능합니다. 피해영상물과 함께 유포되는 개인정보나 키워드 등도 삭제 및 모니터링의 대상입니다. 단, 피해자가 유포 정황을 수사의 증거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수사 진척 상황에 따라 삭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전문 심리상담 및 의료 지원

피해에 대한 초기 상담에 더해 필요에 따라 긴급 위기개입, 가족회복 프로그램, 전문심리상담 및 교육, 병원 진료비 지원 등을 지원해드립니다.

기타 지원

필요에 따라 의료 연계 및 주거 연계, 주민등록번호 변경 등을 지원해드립니다. 피해촬영물과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함께 유포된 경우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적용 법률은 무엇이 있나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 사례에 따른 수사기관·사법기관의 수사 및 판단 등 따라 적용 법률은 다를 수 있습니다.

3

유포 불안

어떤 피해 사례가 있을까요?

“요즘 변형된 모형의 불법 카메라가 많다는데, 혹시 저도 촬영되지 않았을까요?”
 “예전에 사귀던 사람과 성관계 영상을 촬영 했는데 헤어질 때 그 사람이 영상에 대해 언급했어요. 그 영상이 어딘가 유포되었을 것 같아서 불안해요.”

- 유포 불안 피해의 경우 피해영상물 유포 모니터링 지원 혹은 전문심리상담 등을 위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 유포 불안 피해를 겪는 경우 불안을 느끼는 구체적인 원인이나 계기가 있는지 파악해 주세요. 피해상담 시 아래와 같은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 가해자에게 유포 협박을 받고 있나요?
 - ✓ 성적인 사진·영상 등을 촬영한 적이 있나요?
 - ✓ 촬영물을 타인에게 송신한 적이 있나요?
- 유포 불안을 호소하는 피해자의 경우 구체적인 유포 정황이 없더라도 유포 불안을 호소할 수 있습니다. 주고받은 문자를 포함한 대화내역, 접속한 링크, 설치한 파일 등 다양한 요소로 불안이 가중 될 수 있기 때문에 피해 지원 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 **삭제 및 모니터링 지원** : 피해촬영물이 확보되어 있다면 모니터링 지원을 통해 피해자의 심리적 불안을 낮추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전문 심리상담 및 의료 지원** : 피해에 대한 초기 상담에 더해 필요에 따라 전문심리상담 및 교육, 병원 진료비 지원 등을 지원해드립니다.

4

유포 협박

어떤
피해 사례가
있을까요?

“SNS에서 만난 사람이랑 대화하면서 신체 사진을 주고받았는데,
제 사진을 친구(지인)들에게 메신저로 보내겠다고 협박해요.”
“애인에게 헤어지자고 했는데 그동안 서로 주고받은
성적 대화와 촬영물을 온라인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해요.”

- 유포 협박의 가해자는 피해자의 성적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타인 혹은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추가 영상이나 돈, 관계 지속 등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는 가해자와 연락을 끊는 것을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지만, 가해자의 요구를 들어주면 피해가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증거를 수집하여 바로 경찰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 유포를 막을 수 있는 완벽한 방법은 없지만, 협박에 대한 증거(피해촬영물, 문자 및 대화 캡처본, 통화 내역 등)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협박이 진행되고 있다면 추가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신속하게 수사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고 기타 피해 지원을 위해 피해 지원 기관(경기도디지털성범죄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 ☎1544-9112)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 구체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 유포하겠다는 협박만으로도 사건 접수가 가능합니다.
- 가해자가 피해자의 신상에 대해 파악 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수사 기관에 신변 보호 조치, 민사상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 등을 활용하여 보호를 받도록 합니다.

센터에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수사 및 법률 지원

필요에 따라 희망하시는 경우 고소 및 진정을 도와드리며, 전문 법률 상담과 법률 구조(디지털성범죄 전문변호사 선임 및 민·형사 소송비 지원)도 가능합니다.

삭제 및 모니터링 지원

피해영상을 확보한 경우 유포 현황을 파악하는 모니터링 지원이 가능합니다.

전문 심리상담 및 의료 지원

피해에 대한 초기 상담에 더해 필요에 따라 긴급 위기개입, 가족회복 프로그램, 전문심리상담 및 교육, 병원 진료비 지원 등을 지원해드립니다.

기타 지원

필요에 따라 의료 연계 및 주거 연계, 주민등록번호 변경 등을 지원해드립니다.

대표적인 적용 법률은 무엇이 있나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카메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83조(협박죄)

-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 사례에 따른 수사기관·사법기관의 수사 및 판단 등 따라 적용 법률은 다를 수 있습니다.

5

불법 합성 및 도용

어떤
피해 사례가
있을까요?

“제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과 타인의 신체사진이 합성되어 다른 SNS에
게시된 것을 지인을 통해 전달 받았어요.”
“누군가의 성관계 영상에 제 얼굴이 합성되어 불법사이트에 게시된 것을 발견했어요.”

- 사람의 신체를 성적 대상으로 하여 편집·합성·가공하는 경우, 혹은 성적 모욕성을 띠는 글에 타인의 사진과 영상, 음성 등을 도용하는 경우입니다. 주로 청소년 피해자를 괴롭히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며 개인신상정보(이름, 주소, 나이, 핸드폰 번호 등)와 허위 사실과 함께 게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 피해를 입었다면 피해영상물과 합성에 사용된 원본 등을 확보하고 피해 지원 기관(경기도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스톱지원센터 ☎1544-9112)의 도움을 받아 추가 유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합니다.
- 피해영상물과 개인신상정보가 함께 온라인 공간에 게시되었을 때 피해자에게 불특정 다수에게서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수사 기관에 신고하여 대처할 수 있도록 합니다.
- 피해당사자가 아닌 주변인이 피해 사실을 발견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피해 사실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추가 유포 등의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합니다.

센터에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수사 및
법률 지원

필요에 따라 희망하시는 경우 고소 및 진정을 도와드리며, 전문 법률 상담과 법률 구조(디지털성범죄 전문변호사 선임 및 민·형사 소송비 지원)도 가능합니다.

삭제 및
모니터링 지원

피해영상물 원본 또는 피해영상물이 유포된 웹사이트 주소가 확보된 경우 삭제 및 모니터링 지원이 가능합니다. 불법합성물과 함께 유포되는 개인정보나 키워드 등도 삭제 및 모니터링의 대상입니다.

**전문 심리상담
및 의료 지원**

피해에 대한 초기 상담에 더해 필요에 따라 긴급 위기개입, 가족회복 프로그램, 전문심리상담 및 교육, 병원 진료비 등을 지원해드립니다.

기타 지원

필요에 따라 의료 연계 및 주거 연계, 주민등록번호 변경 등을 지원해드립니다. 피해촬영물과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함께 유포된 경우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적용 법률은 무엇이 있나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 ①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합성물·가공물(이하 이 항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③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죄)

-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11조(모욕죄)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례에 따른 수사기관·사법기관의 수사 및 판단 등 따라 적용 법률은 다를 수 있습니다.

6

온라인 내 성적 괴롭힘

어떤
피해 사례가
있을까요?

“동아리 단톡방에 친구(지인)가 자신의 성기 사진(혹은 성적 표현물)을 올렸어요.”
 “제 사진이 도용되어 성적 모욕성 글과 함께 SNS에 게시된 걸 발견했어요.”
 “제가 하는 게임 이용자 게시판에 제 개인정보와 함께
 저를 성적으로 모욕하는 글과 댓글이 자주 올라와요.”

- 사이버 공간 내 성적 괴롭힘은 다양한 피해(모욕, 명예훼손 등)를 포괄하고 있으므로 자세한 초기 상담을 통해 충분한 탐색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 구체적으로 어떤 플랫폼에서 발생한 것인지, 촬영물과 동반하여 피해가 발생한 것인지, 어떠한 성적 모욕 및 명예훼손의 내용이 있는지 등을 파악해야 합니다.
 ※ 동일한 성적 모욕성 글이라도 어느 공간에서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다른 법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내 성적 괴롭힘 중 불특정 다수가 참여하는 채팅방이나 비공개 채팅방에서 촬영물이 아닌 텍스트를 기반으로 한 성적 모욕 및 명예훼손 피해의 경우 삭제 및 모니터링 지원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다른 플랫폼에 추가로 유포되는 경우가 많아 유포현황 모니터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피해사실에 대해 수사 기관에 신고 할 의사가 있다면 신고를 한 뒤 필요한 지원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 텍스트 정보 유통에 대한 조치를 원하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인터넷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촬영물과 동반하여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해당 피해영상물(영상·사진·음성·키워드 등)을 확보하여 피해 지원 기관(경기도디지털성범죄피해지원스톱지원센터 ☎1544-9112)에서 삭제 및 모니터링 지원을 받도록 합니다.

센터에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수사 및 법률 지원

필요에 따라 희망하시는 경우 고소 및 진정을 도와드리며, 전문 법률 상담과 법률 구조(디지털성범죄 전문변호사 선임 및 민·형사 소송비 지원)도 가능합니다.

삭제 및 모니터링 지원

게시글에 포함된 개인정보나 키워드 등도 삭제 및 모니터링의 대상입니다. 단, 피해자가 유포 정황을 수사의 증거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수사 진척 상황에 따라 삭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전문 심리상담 및 의료 지원

피해에 대한 초기 상담에 더해 필요에 따라 긴급 위기개입, 가족회복 프로그램, 전문심리상담 및 교육, 병원 진료비 지원 등을 지원해드립니다.

기타 지원

필요에 따라 의료 연계 및 주거 연계, 주민등록번호 변경 등을 지원해드립니다.

대표적인 적용 법률은 무엇이 있나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적취 목적 대화 등)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
2. 제2조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행위

② 19세 이상의 사람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16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1항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 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제2,5호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죄)

-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11조(모욕죄)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 다. 상대방등에게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 등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 사례에 따른 수사기관·사법기관의 수사 및 판단 등 따라 적용 법률은 다를 수 있습니다.

7

몸캠 피싱

어떤 피해 사례가 있을까요?

“채팅 어플에서 알게 된 사람이 보내준 파일을 설치한 후 화상 채팅을 했는데 제 몸이 찍힌 녹화 영상을 보내주며 제 연락처를 모두 해킹했다고 해요. 돈을 보내지 않으면 가족과 직장 동료에게 영상을 보내겠다고 협박하는데 어떡하죠?”

- 몸캠피싱은 범죄조직이 성별을 속여 채팅 사이트 등에서 피해자에게 접근하고 성적 노출 및 행위를 유도하여 이를 녹화한 후, 휴대폰에 악성코드를 전송하여 녹화된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금전 등을 요구하는 범죄입니다. 최근 수법이 다양화되며 저연령부터 고령까지 피해자의 연령대가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피해자 다수가 피해 사실을 신고하거나 주변에 알리기 어렵하다는 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 가해자의 금전 요구에 응하지 않고, 바로 경찰에 신고하도록 합니다. 또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가해자가 물어보더라도 주거지역이나 이름, 회사 등 개인정보를 절대로 알려주어서는 안 됩니다.
- 범죄 증거와 범인 추적단서를 확보하기 위해 감염매체(스마트폰, 태블릿pc, 노트북 등)을 초기화하지 않은 채로 수사기관에 임의제출 합니다. 또한, 가해자가 악성코드를 원격 삭제하여 증거를 인멸하거나 피해자 관련 사진, 메시지 등 스마트폰 내의 정보를 추가로 빼앗기는 사례가 없도록 전원을 끄거나 비행기 모드로 설정 후 보존 및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 가해자에 의해 휴대폰에 해킹 프로그램이 설치된 경우 스마트폰 서비스 센터 등을 통해 해킹 프로그램을 삭제하려고 시도하는 피해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삭제하려는 시도만으로도 대화나 캡처 증거가 사라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신고할 의향이 있다면 증거가 될 만한 파일들을 백업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수사기관에서 피해사실 조사 시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사항이 필요합니다.

- 피해 경위 / 사용된 채팅 등 사이트 또는 어플, 메신저 종류
- 공격자 ID, 전화번호, 악성코드 인터넷주소(URL), 파일명칭(xxxx.apk) 등
- 구체적 협박 일시, 방법, 내용, 요구 금액
- 송금 시 : 은행 계좌번호, 가상화폐 송금 시 가상화폐 전자지갑 주소, 입금 내역
- 동영상 유포 여부(유포 시 유포시점, 동영상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사람의 수)
- 유포된 동영상 원본 또는 캡처 자료
- 채팅 내용(대화기록) *수사에 단서가 되기 때문에 대화방에서 나오거나 탈퇴하지 않고 그대로 제출

센터에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수사 지원

필요에 따라 희망하시는 경우 고소 및 진정을 도와드리며, 전문 법률 상담과 법률 구조(디지털성범죄 전문변호사 선임 및 민·형사 소송비 지원)도 가능합니다.

삭제 및 모니터링 지원

피해촬영물 원본 또는 피해촬영물이 유포된 웹사이트 주소가 확보된 경우 삭제 및 모니터링 지원이 가능합니다. 피해촬영물과 함께 유포되는 개인정보나 키워드 등도 삭제 및 모니터링의 대상입니다. 단, 피해자가 유포 정황을 수사의 증거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수사 진척 상황에 따라 삭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전문 심리상담 및 의료 지원

피해에 대한 초기 상담에 더해 필요에 따라 긴급 위기개입, 가족회복 프로그램, 전문심리상담 및 교육, 병원 진료비 지원 등을 지원해드립니다.

대표적인 적용 법률은 무엇이 있나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③ 상습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사례에 따른 수사기관·사법기관의 수사 및 판단 등 따라 적용 법률은 다를 수 있습니다.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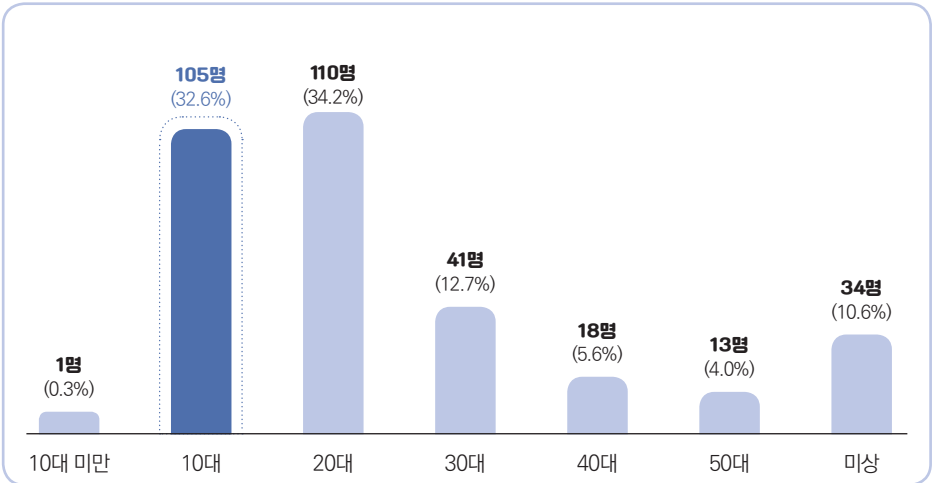
온라인 그루밍

어떤 피해 사례가 있을까요?

“온라인 게임에서 만난 사람에게 채팅으로 고민 상담을 하며 친해졌어요.
처음에는 손 사진, 그 다음에는 얼굴 사진을 요구해서 보내 줬어요.
그런데 점점 수위 높은 사진을 보내라고 하거나 직접 만나자고 해서 곤란해요.”

- 온라인 그루밍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의도를 숨기고 접근해 친밀감을 형성한 뒤 성적으로 착취하는 범죄이며, 다양한 유형의 범죄와 복합적으로 나타납니다. 온라인에서 상대방이 정체를 숨기고 있거나 거짓말을 할 수 있다는 의심을 잘 하지 못하는 아동과 청소년 등이 피해자의 상당 부분을 차지합니다. 하지만 성별과 나이에 상관없이 누구든지 피해를 입을 수 있으며, 특히 정서적으로 취약해져 있는 경우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본인 혹은 주변인이 피해를 인지했다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연령대별 현황 (2022년)



출처 : 2022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 보고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 피해를 인지했다면 증거를 수집하고 피해영상물(사진, 영상, 음성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합니다.
※ 피해자 혹은 주변인이 불안한 마음에, 혹은 피해를 없던 일로 하고 싶은 마음에 가해자와의 대화 내용이나 피해영상물을 삭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자료들은 수사와 피해영상물의 삭제, 모니터링에 필요하므로 삭제하지 않고 수사기관 혹은 피해지원기관에 제출할 때까지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 피해영상물을 확보하지 못했더라도 피해 정황 증거를 가지고 있다면 수사 기관에 사건 접수를 할 수 있고,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증거나 피해영상물 등의 자료를 복구할 수도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말고 피해지원기관(경기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 ☎1544-9112)과 수사기관에 연락하는 것을 권합니다.
- 아동·청소년의 경우 자신이 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평소 아동·청소년의 변화를 면밀히 관찰 할 필요가 있습니다.(메신저 프로필, 상태메시지, 정서 변화 등)

센터에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수사 지원

필요에 따라 희망하시는 경우 고소 및 진정을 도와드리며, 전문 법률 상담과 법률 구조(디지털성범죄 전문변호사 선임 및 민·형사 소송비 지원)도 가능합니다.

삭제 및 모니터링 지원

피해촬영물 원본 또는 피해촬영물이 유포된 웹사이트 주소가 확보된 경우 삭제 및 모니터링 지원이 가능합니다. 피해촬영물과 함께 유포되는 개인정보나 키워드 등도 삭제 및 모니터링의 대상입니다. 단, 피해자가 유포 정황을 수사의 증거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수사 진척 상황에 따라 삭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전문 심리상담 및 의료 지원

피해에 대한 초기 상담에 더해 필요에 따라 긴급 위기개입, 가족회복 프로그램, 전문심리상담 및 교육, 병원 진료비 지원 등을 지원해드립니다.

기타 지원

필요에 따라 의료 연계 및 주거 연계, 주민등록번호 변경 등을 지원해드립니다.

대표적인 적용 법률은 무엇이 있나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 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③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④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알선영업행위 등)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
 2.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
 3. 제1호 또는 제2호의 범죄에 사용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한 자
 4.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알선하는 업소에 아동·청소년을 고용하도록 한 자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 또는 강요한 자
 2.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한 자
 3.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한 자
 4. 영업으로 제2호 또는 제3호의 행위를 약속한 자
- ③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 또는 강요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

-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
 2. 제2조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행위
- ② 19세 이상의 사람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16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1항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아동복지법」 제71조(벌칙)①

-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제1호(「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매매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의2.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례에 따른 수사기관·사법기관의 수사 및 판단 등 따라 적용 법률은 다를 수 있습니다.

9

성매매 강요·유인

어떤
피해 사례가
있을까요?

“집 대신 머물 곳이 필요해서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마침 빈 방이 있다며 재워주겠다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 사람이 재워주는 대신 자기 말을 들어야 한다며 성매매를 하라고 했어요.”

- 성매매 강요·유인 행위 자체는 디지털 기기 혹은 전자통신망을 거치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불법촬영, 유포, 불법합성, 도용, 온라인 그루밍 등 다른 유형의 디지털성범죄와 결합되어 나타나는 특성을 보입니다.
- 디지털성범죄를 통해 피해자의 약점을 잡은 가해자들이 피해자를 성매매로 유인하거나 강요하는 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 최근에는 아동·청소년이 무료 웹툰, 불법 도박, 경마 사이트, SNS, 혹은 디스코팡팡 입장권 강매 등의 루트로 유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 많은 디지털성범죄가 오프라인 상의 성범죄로 이어지고, 오프라인 상의 성범죄 다수가 성매매 강요와 유인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빨리 초기 대응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성매매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는 사회적으로 금기시되는 행동을 했다는 죄책감을 느끼거나 주변에서 거절당할 것이라는 걱정 때문에 피해를 숨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숨기고 방치할수록 피해가 깊어지므로 주변인과 수사기관의 담당자 등은 피해자가 솔직히 말할 수 있도록 포용적이고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센터에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수사 및 법률 지원

필요에 따라 희망하시는 경우 고소 및 진정을 도와드리며, 전문 법률 상담과 법률 구조(디지털성범죄 전문변호사 선임 및 민·형사 소송비 지원)도 가능합니다.

삭제 및 모니터링 지원

피해촬영물 원본 또는 피해촬영물이 유포된 웹사이트 주소가 확보된 경우 삭제 및 모니터링 지원이 가능합니다. 피해촬영물과 함께 유포되는 개인정보나 키워드 등도 삭제 및 모니터링의 대상입니다. 단, 피해자가 유포 정황을 수사의 증거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수사 진척 상황에 따라 삭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전문 심리상담 및 의료 지원

피해에 대한 초기 상담에 더해 필요에 따라 긴급 위기개입, 가족회복 프로그램, 전문심리상담 및 교육, 병원 진료비 지원 등을 지원해드립니다.

기타 지원

필요에 따라 의료 연계 및 주거 연계, 주민등록번호 변경 등을 지원해드립니다.

대표적인 적용 법률은 무엇이 있나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성매매
2. 성매매알선 등 행위
3.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4.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을 고용·모집하거나 성매매가 행하여진다는 사실을 알고 직업을 소개·알선하는 행위
5.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행위 및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행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8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폭행이나 협박으로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사람
 2. 위계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을 파는 사람을 곤경에 빠뜨려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사람

- 3. 친족관계, 고용관계,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보호·감독하는 것을 이용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사람
- 4. 위계 또는 위력으로 성교행위 등 음란한 내용을 표현하는 영상물 등을 촬영한 사람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1. 제1항의 죄(미수범을 포함한다)를 범하고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거나 이를 요구·약속한 사람
 - 2. 위계 또는 위력으로 청소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사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사람
 - 3.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규정된 단체나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1. 다른 사람을 감금하거나 단체 또는 다중(多衆)의 위력을 보이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한 사람
 - 2. 성을 파는 행위를 하였거나 할 사람을 고용·관리하는 것을 이용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낙태하게 하거나 불임시술을 받게 한 사람
 - 4.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규정된 단체나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죄를 범한 사람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1. 업무관계, 고용관계,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게 마약등을 사용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사람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한 사람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 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③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④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알선영업행위 등)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1.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

2.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
3. 제1호 또는 제2호의 범죄에 사용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한 자
4.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알선하는 업소에 아동·청소년을 고용하도록 한 자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 또는 강요한 자
 2.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한 자
 3.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한 자
 4. 영업으로 제2호 또는 제3호의 행위를 약속한 자
- ③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 또는 강요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

-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
 2. 제2조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행위
- ② 19세 이상의 사람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16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1항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아동복지법」 제71조(벌칙)①

-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제1호(「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매매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1의2.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례에 따른 수사기관·사법기관의 수사 및 판단 등 따라 적용 법률은 다를 수 있습니다.

부록

디지털 성범죄 발생 시 교내 처리 절차



디지털성폭력 신고일 경우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 안내(1544-9112)

2023 디지털성범죄 피해 대응 안내서

경기도디지털성범죄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

발행인 김혜순

발행일 2023년 10월

발행처 경기도여성가족재단 |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

주소 (16491)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308번길 34, 3층

홈페이지 <https://gwff.kr/031cut/>

등록번호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 2023-002

경기도 여성가족재단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는 디지털성범죄 피해 지원 및 근절을 위한 공공기관입니다. 본 저작물의 저작권은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에 있으며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 허가 없이 무단복제 및 전재를 금합니다.

2023
디지털성범죄
피해 대응 안내서
경기도디지털성범죄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